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52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김윤덕ㆍ이기헌ㆍ민병덕

이연희 • 허 영 • 윤준병

양문석 • 이춘석 • 문진석

이원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3천 건이넘는 게임물 수정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 및 사업자 편의를 도모할 수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현재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를 전체·12세·15세이용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민간 기구가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해외 사례와 같이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신고를 허용하는 한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1조, 제24조의2 등).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9항"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전단 중 "수정한"을 "수정하는"으로, "24시간"을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다만,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기존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신고한 자는 게임물의 내용이 신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된 게임물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4항제2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제21조제7항"을 각각 "제21조 제9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1조제2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5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의2 중 "변경신고"를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를 각각 제2호의4부터 제2호의8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정된 게임물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 내용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 정 등) ① (생 략) 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1조제9항-----② 위원회는 제21조제7항에 따 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 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 렴하여야 한다. 제21조(등급분류) ① ~ ④ (생 | 제21조(등급분류) ① ~ ④ (현행 과 같음) 략)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 -----수정하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 후 24시<u>간</u>-----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 ----- <후다 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 삭제> 다만, 수정하는 게임물 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 의 내용이 기존의 등급분류에 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 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

급분류를받도록조치하여야한다.<단서 신설><신 설>

<신 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
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
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
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
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게임물의 내
용을 수정하기 전에 신고한 자
는 게임물의 내용이 신고된 내
용과 같이 수정되었는지를 확
인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정된 게임물의 내용을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u> ⑧</u> 제5항 및 제6항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 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 급분류 결정이 <u>제7항</u>의 등급분 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 류를 할 수 있다.
-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 ③ (생 략)
 -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등급분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u>제21조제5항</u>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대상 통보 및 조치
 - ⑤ (생략)
-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자체등급분 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_	
<u>©</u>	
ュ	구 같음)
<u>(1</u>	<u>D</u>
	<u>제9항</u>
_	
제2	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ス]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4)
1	 /처제コ 기 이
	. (현행과 같음) . <u>제21조제5항 및 제6항</u>
Δ.	
(<u>5</u>) (현행과 같음)
	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5	등의 준수사항) ①
-	

- 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제21조제7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등급분류를할 것. 다만, 제21조제7항으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 2. ~ 12.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 위원회는 <u>제21조제2항</u> <u>제1호부터 제3호까지</u>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대상 통보 및 조치

1. <u>제21조제9항</u>
<u>제</u>
<u>21조제9항</u>
· 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 <u>제21조제2항</u>
<u>각 호</u>
1. (현행과 같음)
1. (139 年日)
1. (한 8의 월 a) 2. <u>제21조제5항 및 제6항</u>
. — . , —

- 3. ~ 6. (생략)
- ②・③ (생략)

제41조(수수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5. <u>제21조제5항</u>에 따른 게임물 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 재분류 대상인 자
- ③ (생 략)
-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u>변경신고</u>를 하지 아니 한 자

<신 설>

2의3. ~ 2의7. (생략)

3. ~ 8.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 4. (현행과 같음)
5. <u>제21조제6항</u>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
<u>.</u>
1.•2. (현행과 같음)
2의2
<u>수정 후 24시간 이내</u>
에 신고
 2의3.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정된 게임물의 내용을 위원
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u>2의4.</u> ~ <u>2의8.</u> (현행 제2호의3
부터 제2호의7까지와 같음)
3. ~ 8. (현행과 같음)
O. (EO ED/

3 ~ 6 (형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